

	VISION	학교(성)폭력과 아동학대 대처와 예방방법 안내	송우통신
	생각기움 · 마음올림 · 꿈자람 교육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2021. 1. 25. 교무실: 543-1311 행정실: 542-1584 담당자: 교사 김태환

♥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주변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주변의 아동들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 않고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커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학교(성)폭력 대처(신고) 및 예방방법

▶ 학교(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을 목격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해 주세요.

(전화) 전국에서 국번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 학교폭력, 이렇게 예방해요.

- 평소 가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기
- 자녀의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대화하기
-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사회적 상황과약능력과 대처능력(거절하기, 인사나누기, 대화에 참여하기, 감정표현·조절하기)을 알려주기
-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녀에게 주변에 도와줄 든든한 지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기
-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 아동학대 대처(신고) 및 예방방법

▶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을 목격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해 주세요.

(전화) 시·군·구청 또는 경찰서(국번 없이 112) (문자) #112

(휴대폰앱) 아이지킴콜112로 신고 (방문) 경찰서 또는 시·군·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신고·상담

※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아동학대, 이렇게 예방해요.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이나 유기, 방임하여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 자녀에게 폭언, 모욕적 발언 하지 않기, 훈육 중 신체 체벌하지 않기
- 자녀 혼자 집안이나 차량 안에 방치하고 외출하지 않기
- 자녀의 등교나 재택학습 중 출석이 어려울 때는 학교와 먼저 상의하기

2021년 1월 25일

송우초등학교장